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31
----------	------

제출연월일 : 2023년 8월 14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을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으로 명칭 변경 등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과학교육진흥법] 제3조’를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로,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을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으로, ‘과학전시관’을 ‘융합과학교육원’으로, ‘관장’을 ‘원장’으로, ‘분관’을 ‘분원’으로 함(안 제12조의2 ~ 제12조의5, 별표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별첨 5)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2)

다. 협의: 관련부서와 협의하였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1)
- 입법예고(2023. 7. 20. ~ 7. 29.): 의견 없음
-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제외통보 확인서(별첨 3)
-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 의견서(별첨 4)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절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을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으로, 제12조의2 제1항 중 “「과학교육진흥법」 제3조”를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로,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이하 “과학전시관”이라 한다)”를,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이하 “융합과학교육원”이라 한다)”로,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전시관”을 “융합과학교육원”으로 한다.

제12조의3 중 “관장”을 “원장”으로, “과학전시관”을 “융합과학교육원”으로, 제12조의4 중 “과학전시관”을 “융합과학교육원”으로, 제12조의5 중 “분관”을 “분원”으로, “과학전시관”을 “융합과학교육원”으로 한다. 별표1 제목 중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을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으로, “분관명”을 “분원명”으로, “남산분관”을 “남산분원”으로, “동부분관”을 “동부분원”으로, “남부분관”을 “남부분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절 서울특별시교육청 <u>과학전시관</u>	제2절 서울특별시교육청 <u>융합과학교육원</u>
제12조의2(설치) ① 법 제32조 및 「 <u>과학교육진흥법</u> 」 제3조에 ----- ----- ----- 서울특별시교육청 <u>과학전시관</u> (이하 “ <u>과학전시관</u> ” 이라 한다)을 둔다. ② <u>과학전시관</u> 은 서울특별시 ----- -----.	제12조의2(설치) ① 법 제32조 및 「 <u>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u> 」 제5조에 ----- ----- ----- 서울특별시교육청 <u>융합과학교육원</u> (이하 “ <u>융합과학교육원</u> ” 이라 한다)을 둔다. ② <u>융합과학교육원</u> 은 서울특별시 ----- -----.
제12조의3(관장) <u>과학전시관</u> 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총괄하며, ----- -----.	제12조의3(원장) <u>융합과학교육원</u> 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총괄하며, ----- -----.
제12조의4(업무) <u>과학전시관</u>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 8. (생략)	제12조의4(업무) <u>융합과학교육원</u> 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 8. (현행과 같음)
제12조의5(분관) <u>과학전시관</u> 에 두는 <u>분관</u> 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12조의5(분원) <u>융합과학교육원</u> 에 두는 <u>분원</u> 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현 행		개 정 안	
<p>[별표1] 서울특별시교육청 <u>과학전시관</u> 분원의 명칭·위치(제12조의5 관련)</p>		<p>[별표1] 서울특별시교육청 <u>융합과학교육원</u> 분 원의 명칭·위치(제12조의5 관련)</p>	
<u>분관명</u>	소재지	<u>분원명</u>	소재지
<u>남산분관</u>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46 (회현동1가)	<u>남산분원</u>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46 (회현동1가)
<u>동부분관</u>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23길 20 (면목동)	<u>동부분원</u>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23길 20 (면목동)
<u>남부분관</u>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 로27나길 21 (구로동)	<u>남부분원</u>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 로27나길 21 (구로동)

【별첨 2】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이번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속기관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제1호(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 주무관 한보석(02-2282-8643)

【별첨 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관리번호	2023A서울교육017			
정책명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행정관리담당관		
	담당자명	한보석	전화번호	02-2282-8643
담당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담당자명	홍정미	전화번호	02-399-9675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2023년 07월 24일			
완료(제외) 통보일자	2023년 07월 31일			
<p>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3년 07월 31일</p>				

【별첨 4】

**자치법규 · 단위사업
학생인권영향평가 검토의견서**

자치법규 (단위사업)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담당부서	행정관리담당관	담당자	직급	주무관	성명	한보석 (02-2282-8643)
평가담당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위원장 마한얼				
해당조항	검토의견					검토결과
안 제2절, 제12조의2 ~ 제12조의5, 별표1	<p>-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과학교육진흥법」제3조를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제5조로, '서울특별시교육청과학전시관'을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으로, '과학전시관'을 '융합과학교육원'으로, '관장'을 '원장'으로, '분관'을 '분원'으로 각 개정하려는 것임.</p> <p>- 이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p>					원안동의

【별첨 5】

관련법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18841호]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601호]

제12조(직속기관 등의 하부조직 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시·도 교육청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 또는 조례의 위임에 따른 교육규칙으로 정한다.